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군무원인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용현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부서관 공무원 대우 직급이 타 공무원의 근속년수와 직급체계 대비 낮게 반영되어 있어, 근속년수를 고려하여 대우 직급 상향을 위한 개정임.

3. 주요내용

가. 부서관 근속년수를 고려하여 공무원 대우 직급 상향(안 별표 3, 4)

- 1)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 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
- 2) 경력경쟁채용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대해 원사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의 6급의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징계권자를 정할 때 군인과의 계급 대비란 중 “준위”를 “준위, 원사”로 하고, 같은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별표 4의 군인의 6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준위, 원사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	개정안				
[별표 3]					[별표 3]				
구분	6급	7급	8급	9급	구분	6급	7급	8급	9급
군인	준위	원사 상사	중사	하사	군인	준위 원사	상사	중사	하사
[별표 4]					[별표 3]				
구분	6급	7급	8급	9급	구분	6급	7급	8급	9급
군인	준위	원사 상사	중사	하사	군인	준위 원사	상사	중사	하사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	
연 락 처	(02) 748 - 5128